

<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>

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. [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]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제1호, 제3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“이란 다음 각 호의
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
- 금융 및 보험업
- 부동산업
-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)
- 무도장운영업
-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
-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
-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-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